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위원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2. 제 안 이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
을 180일로 연장하여 기한 경과에 따른 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 상위법령 위임 근거에 맞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함(안 제1
조)
나. 불필요한 적용범위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삭제)
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를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 제14조제3항 단서,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 -----.</p> <p><삭 제></p> <p>제4조(상속 신고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p>

[붙임 1]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5. 27., 2015. 6. 22.>

④ ~ ⑪ (생략)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 ~ ⑦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 연 희

[붙임 3]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21.] [조례 제1898호, 2022. 2. 21.,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통정책과(교통정책과) 044-300-5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제843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98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